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5. 2(금)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3.20.

나. 제안자 : 허인환, 김영분, 이도형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3.20.

라. 상정일자 : 2014. 4.21(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허인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심사내용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정관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게 관련규정 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4.29. 제정된 조례임.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띄어쓰기에 따른 제명 수정과 함께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제1조의 목적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진흥원의 수행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또한 재산출연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안 제5조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할 경우에는 본문이 삭제되는바 “각 호를”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 3.21.부터 4. 2.까지(1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1조 목적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 출연금의 범위를 재산출연으로 하면 출연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의 범위도 더욱 커지게 되므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진흥원의 사업 중에 창업 지원을 확대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허인환·이한구·윤재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0명)
- 수정사항 : 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함.

7.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 관한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인천광역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2.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3. 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
4. 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6. 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
7. 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8.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9.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8조의 제목 중 “(출연금)”을 “(재산출연)”으로 하고, 본문 중 “필요한 자금을”을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 지원등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5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인천소프트타운의 조성 및 운영</u> <u>2.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하는 IT기업 지원</u> <u>3.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u> <u>4.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u> <u>5. 지식산업 분야 국내외전시회, 투자유치설명회, 학술세미나 개최</u> <u>6. 지식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 기술인력 알선,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u> 	<p><u>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u>인천광역시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u> ----- -----.</p> <p>제5조 (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 계획</u> <u>2.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u> <u>3. 지식정보산업 창업지원</u> <u>4. 지식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u> <u>5.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u> <u>6. 지식정보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기술인력 지원,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u>

현행	개정안
<p>7. <u>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u></p> <p>8. <u>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p> <p>제8조 (<u>출연금</u>)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u>필요한 자금을</u>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7. <u>인천지역 소프트타운 조성 및 시설·장비의 관리·운영</u></p> <p>8. <u>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u></p> <p>9. <u>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p> <p>제8조 (<u>재산출연</u>) ----- ----- <u>필요한 경우 토지·건물·자금을</u> -----.</p>